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시행세칙

- 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17조의 1에 의한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교육과정 공동운영이라 함은 국내외 타 대학(이하 타 대학)과의 합의에 의하여 본교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대학선별)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학은 해당 국가의 고등교육(Higher Education)기관으로 인정되는 대학으로 한다.
- 제4조(운영방법)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대한 운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교과과정 본교의 교수와 타 대학 교수와의 협동수업(Co-Teaching)
 - 2. 비교과과정 본교 학생들과 타 대학 학생들 간 역량 증진을 목표로 한 교류 활동
 - 3.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학 간 상호 협의에 따른다.
- **제5조(학점상호인정)** ①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공동운영에 참여한 타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상호협의하여 정한다.
 - ②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에 준해 적용한다.
- **제6조(명칭사용)** 교육과정 공동운영에는 국내의 대학과 외국의 대학명칭을 차례로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제7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타 대학과의 상호 혐의에 따라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